

2024년도 상반기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 공고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동법 시행령 제21조 내지 제23조에 의거 '24년도 상반기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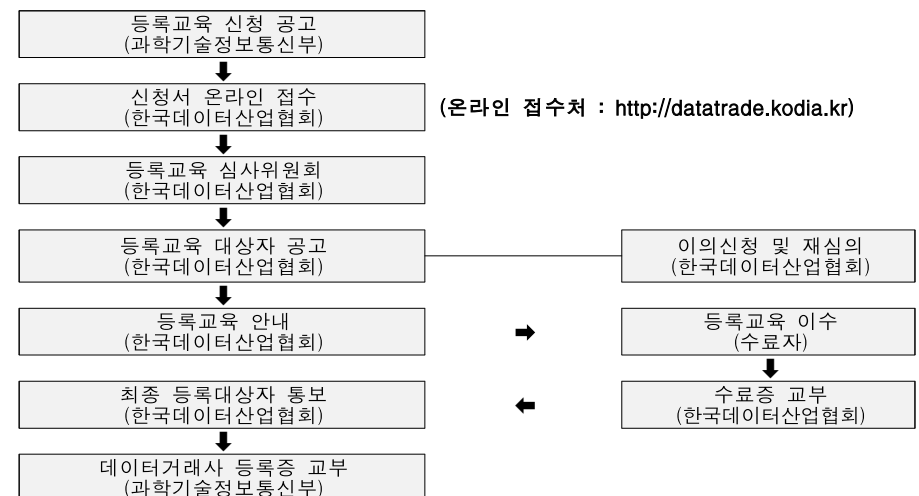
1 데이터거래사 정의

- 데이터 거래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서 데이터거래사 자격 및 경력 기준에 해당되고, 등록교육을 수료한 경우 데이터거래사로 등록 가능
- 데이터거래사라 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 데이터 거래에 관해 다음의 전문적인 업무 중 하나 이상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데이터 거래 및 사업화에 대한 상담·자문·지도업무
 - 데이터 거래의 중개·알선업무
 - 데이터 거래의 수요 탐색·발굴업무
 -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관리 업무
 - 데이터 거래 시장의 조사·분석업무
 - 위 각호의 사후관리 업무
 - 그 밖에 데이터 거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와 이에 따른 상담, 자문, 조사, 분석, 평가, 증명 및 대행(관계 법령에 따라 기관에 대하여 행하는 신고, 신청, 진술, 보고 등의 행위를 포함) 등 제반 업무 지원

2 데이터거래사 자격 및 경력 기준

-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다음의 자격 및 경력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 기준을 충족해야 함
 -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자격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 ③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 ④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일 것
 - 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에서 재직한 기간이 5년 이상일 것
- 상기 경력 및 자격 기준에 대해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심사위원회'에서 인정 받은 자는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3조에 따른 데이터거래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3 데이터거래사 등록절차



- ① 등록신청은 접수기간 내 데이터거래사 사이트(<http://datatrade.kodia.kr>)를 통해 접수
- ②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심사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자격 및 경력요건에 대해 신청자 접수순으로 심사하여, 해당 기수별 등록교육 인원을 '등록교육 대상자'로 선정
- ③ 등록교육 심사위원회 결과에 의거 교육대상자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안내

4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안내

□ 등록교육 일정 및 인원

구분	등록교육 일정 및 시간	교육 인원	교육 방식
5기	'24.05.20. ~ 05.24. (09:00~18:00), 1주 40시간	60명	집합교육
6기	'24.05.27. ~ 05.31. (09:00~18:00), 1주 40시간	60명	

※ 해당 기수별 등록교육 신청자 접수순으로 자격 및 경력요건에 대한 심사를 통해 등록교육 대상자 선정. 단, 기수별 중복 신청은 불가.

□ 등록교육 내용

일자	교육과정 (대분류)	교육내용 (중분류)
1일차	데이터 거래에 대한 수요 탐색발굴, 시장조사·분석 (8H)	데이터 경제 및 시장의 이해 (5H)
		데이터 거래 비즈니스 (3H)
2일차	데이터 가공, 분석 등 데이터 처리 (8H)	데이터 개요 (2H)
		데이터 가공 및 전처리 사례 (3H)
3일차	데이터 가치평가 및 품질평가 (8H)	데이터 분석 사례 (3H)
		데이터 가치평가 (4H)
4일차	데이터 관련 법제도 및 거래 윤리 (8H)	데이터 품질관리 (4H)
		데이터 관련 법률 (4H)
5일차	데이터 거래에 관한 상담·자문·지도, 중개·알선, 데이터 이전·사업화 (8H)	데이터 거래 규범과 사례 (3H)
		데이터 거래 윤리 (1H)
		데이터 상품화 이해 (3H)
		데이터 거래 사업화 (5H)

※ 등록교육 과정은 일자별 조정 등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사항 : 교육비 및 교육교재 무료

□ 교육장소 : 서울시 마포구 성암로 189 중소기업DMC타워 3층 대회의실

※ 교육장소는 내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등록교육 신청 접수

가. 신청안내

- 신청기간 : 2024. 4. 1. 09:00부터 ~ 4. 12. 18:00까지
- 신청방법 :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홈페이지(www.kodia.kr)에서 데이터거래사 사이트(<http://datatrade.kodia.kr>)를 통해 접수
- 제출서류

NO	제출서류	수량	비고
1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
2	경력(재직)증명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별지 서식은 작성 등록되어야 함 단, 별지 서식으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경력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
3	이력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반명함판 사진(3×4cm) 포함]
4	자격증 사본	1부	※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로서 해당 자격 취득자에 한함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신청자가 직장가입자인 경우 모두 해당 - 기업 대표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 제출 - 국가유공자의 경우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 제출
6	최종 학위증명서	1부	※ 최종 학위증명서에 한하여 제출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8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1부	별지 제5호 서식

- 문의사항 : 한국데이터산업협회 (www.kodia.kr)
전화 : 070-4260-2297, 이메일 : datatrade@kodia.kr

나. 유의사항

- 등록교육 신청 시 '2024년도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심사기준'을 반드시 참조
- 교육일정 중복(5기, 6기) 신청 및 제출서류 미비한 경우 접수 불가
-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해당 기수별 신청 접수순으로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심사위원회 심사에 의거 기수별 등록교육 인원 선정

6 등록교육 신청결과 안내

- 심사 :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 결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한국데이터산업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및 개별 안내
- 심사결과 이의신청
 - 등록교육 심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 (신청시 명확한 근거자료 필요)
 -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하며, 이의신청시 불명확한 신청 사유, 근거자료 미포함 등 사유로 기각 처리될 수 있음
 - 이의신청기간 : '24. 4. 24 ~ 4. 26, 3일간
 - 이의신청방법 : 이의신청기간 내 데이터거래사 사이트(<http://datatrade.kodia.kr>)로 제출

7 기타 유의사항

- 등록 취소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 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붙임 : 1.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경력(재직)증명서 (별지 제2호 서식)
3. 이력서 (별지 제3호 서식)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별지 제4호 서식)
5.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별지 제5호 서식)
6.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대상자 심사결과 이의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성명	한글	생년월일
	주소		
	전자우편주소	핸드폰	
자격분야 ¹⁾		☐ 변호사 ☐ 변리사 ☐ 공인회계사 ☐ 감정평가사 ☐ 기술사 ☐ 학교의 조교수 이상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재직 한 기간이 5년 이상	
희망기수 ²⁾		☐ 5기 : 2024.05.20.~05.24 ☐ 6기 : 2024.05.27.~05.3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제23조 및 동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데이터 거래사 등록교육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데이터산업협회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의 충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 주) 1. 자격분야 중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만 기표(√)하고, 중복 선택 불가
 2. 신청자의 참여가 가능한 기간 선택(중복 선택 시 접수 불가)

경력(재직)증명서

1. 기본사항

기 관 현 황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대표전화	
	발급책임자		발급책임자 연락처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직 종		직 위(직 급)	
	근무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총 근무기간	년 월
용 도	데이터거래사 등록교육 신청용			

2. 세부 경력사항

NO	근무기간 ¹⁾	부서명	직위(직급)	담당업무	세부 수행업무 ²⁾
1	199 . . ~ 1999. . .				○ ○ ○
2	2000. . . ~ 200 . . .				○ ○ ○
3					

※ 세부 수행업무 란에는 재직기간 중 데이터거래사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연구과제명, 기타 프로젝트 명칭 등으로 구체적으로 기재바랍니다.

상기 사항이 이상 없음을 증명합니다.

20 . . .

(기관명) (대표자) 인

【작성요령】

- 주) 1. 근무기간은 해당업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해당 연도, 월, 일까지 상세히 기재할 것
2. ‘세부수행업무’란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한 자격에 대한 경력기준 년수를 충족할 수 있는 업무수행 내역을 기재할 것
- 신청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과제, 프로젝트 명칭 등으로 명시할 것

자격 요건 (근무처, 부서, 직위 등)	경력 요건 (근무기간 및 수행업무)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데이터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데이터 관련 연구경력이 3년 이상
③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소지자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
④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 관련 분야 석사학위소지자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4년 이상
⑤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관련 분야에서 재직할 자	데이터 관련 업무경력이 5년 이상

- ※ 유의사항
1.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자, 발급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책임지지 않으며,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2. 경력(재직)증명서는 규정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를 반려함
3. 동일직종으로 이직한 경우에 한해 경력(재직)증명서 각각 제출
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의 근무기관이 서로 상이할 경우 경력(재직)증명서를 근무기관별 각각 제출

사진 (3×4Cm)	이 력 서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현 주소				
현 직장	기관명		부서/직위	
학력	졸업년도	학교명	전공	비고
경력	근무기간	소속 및 부서	직위	주요업무
자격	취득일자	자격증명		인가·관리기관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성 명 (인)				

- 9 -

구 분	세 부 내 용
개인정보 수집·이용목적	데이터거래사 등록 신청 및 심사시 확인용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전화번호 등 등록 신청 및 심사시 필요한 제반 정보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데이터거래사 등록 심사 및 등록증 발급 기간
제공 거부에 따른 불이익	데이터거래사 등록 심사 및 등록에 제한이 따름

◆ 수집한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한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등록교육대상자 외 제출받은 서류는 등록교육 종료 후 일괄 파기합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반드시 법적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10 -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성명 : (서명)

- 11 -